

[별표 3]<개정 1997.3.24., 1999.3.18>

양식어업의 종류, 양식방법, 양식물, 어장의 수심,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사이의 거리(제11조 관련)

1. 해조류양식어업

양식어업의 종 류	양식방법	양식물	어장의 수심 (단위: 미터)	어장구역의 한계 (단위 : 헥타아르)		어장사이의 거리 (단위 : 미터)
				어촌계(지구별조합)	어촌계(지구별조합)외의 자	
가. 수하식양식어업	1. 건홍식 · 지주망홍 · 부류망홍	김 · 파래	7이내	1이상	1 내지 20	200이상
		김 · 파래	30이내	1이상	1 내지 20	200이상
나. 바닥식양식어업	1. 투석식 · 천 해	미역 · 다시마 · 톳 · 파래 · 갈래곰보 기타 유용수산 식물	30이내 (강원도 · 경상북 도 및 제주도의 경우에는 40이내)	1 내지 20	1 내지 20	100이상
		돌김 · 우뚝가 사리 · 꼬시래 기 기타 유용 수산식물	30이내	1 내지 30	1 내지 20	200이상

2. 패류양식어업

양식어업의 종 류	양식방법	양식물	어장의 수심 (단위: 미터)	어장구역의 한계 (단위 : 헥타아르)		어장사이의 거리 (단위 : 미터)
				어촌계(지구별조합)	어촌계(지구별조합)외의 자	
가. 수하식양식어업	1. 간 이 식 2. 연 승 식	굴 기타 패류	2이내	1 내지 5	1 내지 5	100이상
		굴 · 전복 · 진 주조개 · 홍합 · 가리비 기 타 패류	30이내 (강원도 · 경상북도 의 경우에는 70이 내, 제주도의 경 우에는 40이내)	1 내지 20	1 내지 20	100이상
		굴 · 진주조개 기타 패류	30이내	1 내지 30	1 내지 20	100이상
나. 바닥식양식어업	1. 살포식 · 간석지 · 천 해	백합 · 고막 · 바지락 · 가 무락 · 동죽 · 개 량조개 기타 패류	0	1 내지 100	1 내지 20	100이상
		피조개 · 새고	40이내 (강원도	1 내지 30	1 내지 20	100이상

	2. 투석식등 · 간석지 · 천 해	막·가리비 기타 패류 굴 전복·소라 기타패류	의 가리비양식의 경우에는 50이내) 0 30이내	1 내지 20 1 내지 30	1 내지 20 1 내지 20	100이상 200이상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3. 어류등 양식어업

양 식 어 업 의 종 류	양 식 방 법	양 식 물	어 장 의 수 심 (단 위: 미 터)	어장구역의 한계 (단위 : 헥타아르)		어장사이의 거리 (단위 : 미터)
				어촌계(지구별조합)	어촌계(지구별조합)외의 자	
가. 가두리식양식 어업	가두리식	어류·갑각류	30 이내	0.5 내지 10	0.5 내지 10	300 이상
나. 축제식양식어업 다. 수하식양식어업	축제식 연승식	어류·갑각류 우렁쉥이·미 더덕 기타유용 수산동물	10 이내 30 이내(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에 는 70이내, 제주도 의 경우에는 40이 내	0.5 내지 20 1 내지 20	0.5 내지 20 1 내지 20	- 100 이상
라. 바닥식양식어업	1. 살 포 식 · 간석지 · 천 해	갯지렁이 기타 유용수산동물 성게·해삼 기 타유용수산동물	0 40 이내	1 내지 100 1 내지 30	1 내지 20 1 내지 20	100 이상 100 이상

4. 복합양식어업

양 식 어 업 의 종 류	양 식 방 법	양 식 물	어 장 의 수 심 (단 위: 미 터)	어장구역의 한계 (단위 : 헥타아르)		어장사이의 거리 (단위 : 미터)
				어촌계(지구별조합)	어촌계(지구별조합)외의 자	
가. 수하식양식어업	1. 연 승 식	미역·다시마, 미역·툇. 다시 마·툇, 미역· 다시마·툇, 미역·우렁쉥이 , 다시마·우렁 쉥이, 다시마· 전복, 툇·전 복, 미역·전복 ,미역·가리비 다시마·가리비	30 이내 30 이내(강원도 ·경상북도 및 제 주도의 경우에는 40 이내)	1 내지 20 1 내지 20	1 내지 20 1 내지 20	100 이상 100이상
나. 바닥식양식어업	2. 건 흥 식 과 연 승 식 1. 살 포 식 2. 살 포 식 과 투 석 식	김·가리비 해삼·성게 굴·바지락	30 이내 40 이내 0 이내	1 내지 20 1 내지 30 1 내지 100	1 내지 20 1 내지 20 1 내지 20	2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

다. 혼합양식어업	1. 건 홍 식 과 살 포 식	김 · 바지락, 김 · 동죽, 김 · 개량조개	7 이내	1 내지 100	1 내지 20	200 이상
	2. 연승식과 천해투석식	툰 · 전복, 다 시마 · 전복, 미역 · 전복	30 이내	1 내지 20	1 내지 20	200 이상

5. 협동양식어업

양식어업의 종류, 양식방법, 양식물, 어장구역의 한계와 어장사이의 거리는 해조류양식어업 · 패류양식어업 · 어류등 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. 다만, 협동양식어업과 마을어업이 연접되어 있고 소유자가 같을 경우에는 어장사이의 거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.